

구미시 농가소득증대화사업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년월일	2015. 02. .
발 의 자	한성희 의원 외 10명

구미시 농가소득증대화사업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한성희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15. 2. .

발 의 자 : 한성희 · 김상조 · 김인배 · 김재상
김정곤 · 박교상 · 안장환 · 윤영철
윤종호 · 임춘구 · 정근수 의원

1. 제안이유

- 현재 운용중인 구미시 농가소득증대화사업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제7조의 “금융기관 부담”은 상위법의 위임 없이 금융기관에게 융자금 이자를 부담하도록 되어있어,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를 삭제, 정비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-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를 삭제 정비(안 제7조)

3. 개정조례(안)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- 나. 예산관련 : 해당없음
- 다. 부서의견 : 해당없음
- 라. 기 타 : 신 · 구조문대비표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 농가소득증대화사업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농가소득증대화사업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(보조금 지급한도 및 보조비율 결정) ‘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구미시, 금융기관 및 사업자가 부담한다.’를 ‘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구미시 및 사업자가 부담한다.’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7조(보조금 지급한도 및 보조비율 결정)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<u>구미시, 금융기관</u> 및 사업자가 부담 한다. 단, 구미시에서 부담하는 비율은 10퍼센트 이내로 한다.	제7조(보조금 지급한도 및 보조비율 결정) ----- <u>구미시</u> ----- ----- . ----- ----- -----.

관계법령

□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

제63조(농어업 정책자금의 지원·관리) ① 정부는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어업을 주업(主業)으로 하는 농어업인 등에 대한 정부의 융자금·보조금 지원 등 농어업 정책자금의 운영·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융자금·보조금 등 농어업 정책자금의 운용·관리 및 감독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7.25., 2013.3.23.>

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농어업 정책자금의 운용·관리 및 감독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 <신설 2011.7.25., 2013.3.23.>

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<신설 2011.7.25., 2013.3.23.>